##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870

발의연월일: 2021. 6. 18.

발 의 자:이병훈·서영교·한준호

송갑석 · 오영환 · 전재수

임오경 · 양향자 · 김병욱

민형배 · 김철민 · 유정주

어기구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체작업에 있던 5층짜리 상가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면서 건물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한 대가 건물 잔해에 깔려 운전기사와 승객 등 해당 버스의 탑승자 17명이 사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음.

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버스정류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등 해체 현장 인근의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가 있었더라면 이번 참사가 발생할 개연 성이 낮아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.

실제로 사고 당시의 영상기록 등에 따르면 참사를 당한 버스와 나란히 달리고 있던 다른 시내버스 한 대는 붕괴된 건물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지 않아 이번 사고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.

이에 건축물 해체로 인하여 주변의 통행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

있다고 판단되면 허가권자가 버스정류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, 건축물 해체현장 주변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, 관련 사고의 발생 위험을 낮추려는 것임(안 제30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0조의3(해체 현장 주변의 통행안전을 위한 조치) ①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로 인하여 해체 현장 주변의 통행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버스정류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허가권자는 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30조의3(해체 현장 주변의 통
	행안전을 위한 조치) ① 허가
	권자는 건축물 해체로 인하여
	해체 현장 주변의 통행에 위험
	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
	하면 버스정류소의 위치를 변
	경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
	하는 등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
	를 하여야 한다.
	② 허가권자는 관리자에게 제1
	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
	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
	<u>할 수 있다.</u>